

의안번호	2218334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 5. 21.
추계번호	26C2161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	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를 삭제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 삭제(안 제5조제4항)

-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,¹⁾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과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⁾

1) **법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2) **시행령 제3조의2(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. <개정 2022.4.19., 2025.10.1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개정안에 따라 기준·범위를 삭제하고, 소득수준 등의 고려 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신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는 이를 신청하는 비율과 바우처금액 또는 지원되는 생리용품 가격 등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 중인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2026년 기준 국비 160.4억원, 지방비 176.6억원임
 - (취약계층 9~10세) 688만원(국비 기준)
 - 19천명(지원대상) × 50%(초경비율) × 88%(예산신청률) × 168천원(연간 지원액) × 보조율 30~70%(서울30, 지방50, 평택70)
 - (취약계층 11~24세) 15,358백만원(국비 기준)
 - 213천명(지원대상) × 88%(예산신청률) × 168천원(연간 지원액) × 보조율 30~70%(서울30, 지방50, 평택70)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[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19.>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19.>
 -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9.3.19., 2022.4.19., 2025.10.1.>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.>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

참고자료: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
- (추진경과) '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의 대체용품(신발 깔창, 수건 등) 사용 사례 이슈화 → '16. 9월 보건소 통해 취약계층·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지원(복지부) → '18년 성평등부로 업무 이관 → '19년 바우처 지원 방식 전면 시행 → '22년 지원대상 연령 확대('21년 취약계층 11~18세 → '22년 취약계층 9~24세)
- (지원대상) 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~24세 여성청소년
- (지원내용) 생리용품 구입비(바우처) 지원(年 16.8만원)
 - (지원단가 추이) ('19) 10.5천원 → ('22) 12천원 → ('23·'24) 13천원 → ('25·'26) 14천원
 - (산출근거) 월 14,000원 = 389원 X 1일 사용갯수 6개 X 평균 생리일수 6일
- (신청방법)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·모바일 앱에서 신청
- (사업예산) 총 337억원(국비 160.4억원/지방비 176.6억원) *사업운영비 별도

□ 바우처 지원 절차

구 분	주 요 내 용
지원신청 (청소년 본인, 주양육자 등)	-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(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) - 복지로 누리집*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* http://www.bokjiro.go.kr/ ,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※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,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
지원결정 (지자체 담당자)	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-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
물품구매 (지원대상자)	- 국민행복카드 발급 (신청 단계에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가능) - 온·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